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8
----------	-----

2025. 3.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실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 체결한 각종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은 총 284건으로 연 평균 약 94.6건이며, 월 7.9건으로 적지 않은 수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이 업무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업무제휴기관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정성 및 예산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결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목	구분	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대상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도의회 보고
제4조	적용범위	제8조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제휴, 업무협약, 총괄부서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민과 집행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함
- **안 제3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써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체결 후 종합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집행기관의 책임있고 신중한 체결과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
- **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체결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적용하되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계약, 3)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사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안 제5조**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책 및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열거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 및 업무에 적용이 됨
 - 특히, 제3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경제 기획, 지역산업 육성 등 경제 통상 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것임

- 다만, 투자유치 관련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 제7조제2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보장함

○ **안 제6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휴기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를 위해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매년 업무평가를 통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이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절차, 방법 및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사항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7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매년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의회의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의 근거를 마련함

- 특히,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4)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도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효율적이고 내실화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함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정보 등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

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음

- 아울러 매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 평가결과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목적달성, 취소 등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의회의 철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와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의견을 냄

○ **안 제8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안 제7조제2항과 연계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개의 예외를 두고 있음

○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추진중인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지속성을 보장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책임성,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등의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재정적 부담 및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주요한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체결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체결한 이후에 매년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행기관과 도의회와의 소통강화로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내용 및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등의 역할과 체결 및 관리를 위한 절차, 관련 서식 및 추진상황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등에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 및 담당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책, 보건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행정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전,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2. 이행실적,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 업무평가

③ 도지사는 매년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이행실적

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절차 및 방법,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도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이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의 평가 결과를 매년 최초 개최되는 도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
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이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제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